

의안번호	2112390
의 퇴 인	곽상도 의원
회 답 일	2021. 10. 8.
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¹⁾

□ 고등교육지원(안 제5조제2항 신설)

- 교육부장관은 보통교부금의 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(이하 “고등교육지원율”이라 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(이하 “고등교육지원금”이라 한다)을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의 교육 및 행정 운영 등에 지원할 수 있음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□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

III. 미첨부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보통교부금으로 고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 시·도교육청별 교육안정화기금에 대한 전입금이 감소할 수 있고, 이에 따른 재정수입감소분이 추가재정소요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

- 재정수입감소액 = $\sum_{t=2022}^{2026} [\text{보통교부금}_t \times \text{고등교육지원율}_t]$

- 개정안에 따른 고등교육지원금이 모두 기존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경

1) 안 제6조제2항은 기준재정소요액 산정과 관련하여 단위비용을 교육부령으로 정할 때 학생 수를 고려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,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 및 시·도별 보통교부금 교부액이 변경될 수 있음. 그러나 기존 보통교부금 재원 내에서 배분기준이 변경되는 것이므로, 개정안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

우 재정지출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으나, 해당 금액만큼 시·도교육청 교육안정화기금의 재정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·도교육청의 재정수입 감소분이 발생

- 현재 시·도교육청은 외부 의존수입이 높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조례로 “교육재정안정화기금”을 한시적으로 설치·운영하고 있으며,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함²⁾
- 개정안에 따른 고등교육지원이 현행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재정지원 사업 포함 여부 및 규모, 신규 사업 신설 여부 및 규모에 따라 재정지출 증가분이 결정되는데, 현 시점에서 이를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재정지출 증가분을 추정하기 곤란함
- 2019년 기준 대학재정지원사업으로 교육부는 9조 5,154억원을 지원함

[표 1] 2019년 지원주체별 대학재정지원사업 지원액

(단위: 억원)

구 분	중앙정부			지방정부	합 계
	교육부	타부처	소계		
지원액	95,154	42,366	137,520	4,772	142,292

자료: 교육부

- 그런데 개정안은 고등교육지원율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므로 현 시점에서 고등교육지원금 및 이에 따른 시·도교육청별 교육안정화기금 전입금 감소분을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음
 - 참고로 최근 시·도별 교육재정안정화 기금의 적립 현황은 다음과 같음

2)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4조(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 1.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(이하 “교육비특별회계”라 한다) 전입금
 2. 기금운용수익금
 3. 그 밖의 수입금
 ②·③ (생략)

(단위: 백만원)

시·도	2019			2020			최초 조례 시행일 ~ 현행 조례 일몰기한
	기금 수입		기금 지출	기금 수입		기금 지출	
	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			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			
서울	—	—	—	—	—	—	'20. 7.16.~'24.12.31.
부산	390,000	390,000	—	469,748	72,570	—	'19. 5.22.~'25.12.31.
대구	—	—	—			—	'19.10.10.~'25.12.31.
인천	—	—	—	166,974	166,971	—	'20. 5.25.~'24.12.31.
광주	—	—	—	24,802	24,800	—	'20. 3. 1.~'23.12.31.
대전	29,000	29,000	—	92,362	63,000	—	'19. 8. 9.~'24.12.31.
울산	—	—	—	75,009	75,000	—	'20. 4. 2.~'24.12.31.
세종	173,809	173,809	—	182,032	6,059	—	'19. 7.10.~'23.12.31.
경기	—	—	—	148,356	148,323	—	'19.10. 1.~'24.12.31.
강원	210,000	210,000	—	311,812	99,000	—	'19. 7. 5.~'23.12.31.
충북	153,000	153,000	—	193,943	40,000	—	'19. 9.20.~'23.12.31.
충남	—	—	—	64,160	64,160	—	'20. 6.10.~'24.12.31.
전북	—	—	—	120,256	120,000	—	'20. 4. 3.~'24.12.31.
전남	—	—	—	—	—	—	'20. 7. 2.~'25. 6.30.
경북	227,002	227,002	—	320,170	91,000	—	'19. 5.23.~'23.12.31.
경남	—	—	—	136,000	136,000	—	'19. 9.26.~'23.12.31.
제주	—	—	—	—	—	—	'21. 1. 1.~'25.12.31.
계	1,182,811	1,182,811	0	2,305,624	1,106,883	0	—

자료: 교육부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국회예산정책처	사회비용추계과
과 장	이진우
추계세제분석관	박나경
연 락 처	02-6788-4627
	nkpark@assembly.go.kr